



2021년 08월 21일 경찰공무원 시험 경찰학개론 기출문제 해설

경찰학 김민현

— 한국경찰학원은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

수업일 21년 08월 24일(화)

<2021년 2차 시험 총평>

먼저, 시험을 치르느라 고생하신 모든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말을 전합니다.

21년 2차 채용시험의 경찰학개론의 난이도는 ‘중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영어 등 다른 과목의 난이도를 함께 고려하여, 시간 배분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실제 체감 난이도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문제의 유형 또한 단순 암기보다는 전반적인 법령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도록 변별력을 가지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공부를 하시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분명 다 배운 내용인데 정확한 답을 고르기가 애매하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순히 혼자서 문제만 풀고, 전체적인 흐름 파악이 안되신 분들은 전반적으로 어렵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문제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제 수업에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아동학대의 경우는 시험 전날에도 정확히 출제를 예측했었고, 집시법의 경우에는 이번에는 소음제한 규정이 출제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권보호규칙의 경우에는 각각과 각하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수업시간에 다 강조했던 내용이고, 몇일전 카페를 통하여 범죄이론과 학자들의 연결도 정리해 드렸습니다. 11번의 경직법 문제도 보호조치가 가장 중요한 출제의 포인트라고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나머지 문제들도 수업시간에 다 다루었던 문제들입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문제는 8번과 10번, 19번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8번 문제는 올해 초 개정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피한정후견인이 빠졌는데, 올해초에 수업에서 언급드리고, 그동안 경찰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를 위주로 설명했고, 그 중 ㉠, ㉡, ㉢ 지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수업의 내용을 떠올려보면 답의 유추선택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10번 문제는 특강 시간에 ‘중합’, ‘정보보안’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통제구역, 나머지는 제한구역이라고 말씀드렸구요. 제 설명이 떠올랐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19번의 수사준칙은 형사소송법 시간에 다루는 내용인데 특이하게 경찰학에서 출제되었구요, 형사소송법 수업을 잘 들으셨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 세 문제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문제들은 충분히 기본기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볼 때, 경찰학은 80점 이상이면 고득점이고, 70점 정도면 합격선에 도달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경찰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경찰기관이 행정경찰 및 사법경찰 업무를 모두 담당한다.
- ② 진압경찰은 이미 발생한 위해의 제거나 범죄의 수사를 위한 경찰작용으로 범죄의 수사, 범죄의 제지, 총포·화약류의 취급제한, 광견의 사살 등이 있다.
- ③ 봉사경찰은 서비스·계몽·지도 등 비권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활동으로 방법지도, 청소년선도, 교통정보제공 등이 있다.
- ④ 협의의 행정경찰은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여 그 행정작용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찰작용으로 경제경찰, 산림경찰, 철도경찰 등이 있다.

정답 : ②

해설 : ② **총포·화약류의 취급제한, 광견의 사살**은 사전에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예방경찰의 활동**에 해당한다.

2. 우리나라 경찰의 역사적 사실을 오래된 것부터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경찰윤리헌장 제정
- ㉡ 내무부 민방위본부 소방국으로 소방업무 이관
- ㉢ 경찰공무원법 제정
- ㉣ 경찰서비스헌장 제정
- ㉤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승격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 ③

해설 : ㉠ 경찰윤리헌장 제정 ➡ 1966년

㉡ 내무부 민방위본부 소방국으로 소방업무 이관 ➡ 1975년

㉢ 경찰공무원법 제정 ➡ 1969년

㉣ 경찰서비스헌장 제정 ➡ 1998년

㉤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승격 ➡ 1991년

3. 경찰의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경찰의 임무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피해자 보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 ② 범죄예방의 불가침성은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로서, 공법규범에 대한 위반은 일반적으로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협으로 취급되어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된다.
- ③ 공공질서란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서 공공사회에서 개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공공질서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유동적 개념이다.

- ④ 위협이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에 손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에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위협은 구체적 위협과 추상적 위협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경찰 개입은 구체적 위협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정답 : ④

해설 : ④ 경찰개입은 **구체적 위협 내지 적어도 추상적 위협이 있을 때 가능**하며, 환경법 영역에서와 달리 사전배려의 원칙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다음 중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진정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진정인이 진정을 취소한 경우
- ② 사건 해결과 진상 규명에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③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④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공소시효, 징계시효 및 민사상 시효 등이 모두 완성된 경우

정답 : ③

해설 :

진정의 기각 사유(사구침)
1.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진정 내용이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따로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진정 내용은 사실이나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정의 각하 사유
1. 진정 내용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진정 내용이 명백히 사실이 아니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으로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하게 한 경우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공소시효, 징계시효 및 민사상 시효 등이 모두 완성된 경우 5.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른 권리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기간의 경과 등 형식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종결된 경우는 제외한다) 6. 진정이 익명(匿名)이나 가명(假名)으로 제출된 경우 7. 진정인이 진정을 취소한 경우 8. 기각 또는 각하된 진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진정한 경우 9. 진정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관계자를 근거 없이 비방하는 등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진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0. 진정의 취지가 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대되는 경우 11.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서의 내용과 같은 사실을 이미 조사 중이거나 조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진정인의 진정 취소를 이유로 각하 처리된 사건은 제외한다)

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침해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는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은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당사자 양쪽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반론보도청구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한다.

정답 : ④

해설 : ④ 반론보도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 한다.

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 ④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중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 ①

해설 : ①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구두 X)** 신고하여야 한다.

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감으로 보하며,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 ②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③ 국가수사본부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④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정답 : ④

해설 : ①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치안감 X**)으로 보하며,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②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있다 X**).

③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X**)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8. 「경찰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상 공통된 임용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③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성폭력범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정답 : ①
해설 : ① 「국가공무원법」상 **피한정후견인은 최근의 개정으로 임용결격사유에서 제외**되었다.(2021. 1. 12)

9. 경찰공무원의 징계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찰공무원 징계령」상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및 강등이 있으며, 경징계에는 정직, 감봉 및 견책이 있다.
 - ② 「경찰공무원 징계령」상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 ③ 「국가공무원법」상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 ④ 「경찰공무원법」상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정답 : ④
해설 : ① 「경찰공무원 징계령」상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및 강등, **정직**이 있으며, 경징계에는 **감봉 및 견책**이 있다.
② 「경찰공무원 징계령」상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써(징계 위원회의 위원장 X)**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국가공무원법」상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10.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에서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전자교환기(통합장비)실
 ㉡ 정보통신관제센터
 ㉢ 정보보안기록실
 ㉣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항공대
 ㉤ 종합상황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 ②
해설 : ㉡ **정보보안기록실**, ㉤ **종합상황실**은 **통제구역**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제한구역에 해당한다. 참고 : 보호지역의 구분- 구별기준 : 시설의 중요도 및 취약성

제한 지역	비밀 또는 국·공유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방호·경비인력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지역	경찰서 전역
제한 구역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III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	① 전자교환기(통합장비실) 및 교환실 ② 발간실 ③ 송신 및 중계소 ④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항공대 ⑤ 작전·경호 및 정보·보안업무 담당부서 전역 ⑥ 감식과(과학수사센터)
통제 구역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	① 암호취급소 ② 정보·보안기록실 ③ 비밀발간실 ④ 무기고 및 탄약고 ⑤ 암호장비 및 정보보호장비관리실 ⑥ 정보상황실 ⑦ 종합상황실 ·치안상황실 ⑧ 종합조치처리실

11.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보호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만약,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처벌한다.
 - ②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관할경찰관서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 ③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한 경우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더라도 보호조치할 수 있다.

정답 : ③
해설 :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만약,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경찰관 직무집행법**」 X)에 따라 처벌한다.
②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관할경찰관서 X)**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④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한 경우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면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

12. 범죄원인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 ① 쇼와 맥케이(Shaw & Mckay)의 사회해체이론 - 빈민(slum) 지역에서 범죄발생률이 높은 것은 도시의 산업화·공업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제도나 규범 등이 극도로 해체되기 때문으로, 이 지역에서는 비행적 전통과 가치관이 사회통제를 약화시켜서 일탈이 야기되며 이러한 지역은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비행발생률은 감소하지 않는다.
- ② 레클리스(Reckless)의 견제(봉쇄)이론 - 고전주의 범죄학 이론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인간은 범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큰 고통을 받게 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다. 범죄통제를 위해서는 처벌의 엄격성, 신속성, 확실성이 요구되며 이 중 처벌의 확실성이 가장 중요하다.
- ③ 버제스와 에이커스(Burgess & Akers)의 차별적 강화이론 - 범죄행위의 결과로서 보상이 취득되고 처벌이 회피될 때 그 행위는 강화되는 반면, 보상이 상실되고 처벌이 강화되면 그 행위는 약화된다.
- ④ 머튼(Merton)의 긴장(아노미)이론 -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과의 간극이 커지면서 아노미 조건이 유발되어 분노와 좌절이라는 긴장이 초래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범죄를 선택한다.

정답 : ②

해설 : ② 레클리스(Reckless)의 견제(봉쇄)이론 - **주변의 범죄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비행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인 좋은 자아관념을 발전시켜 강력한 내면적 통제와 이를 보강하는 외부적 통제가 사회적, 법적 행위규범의 위반에 대한 하나의 절연체를 구성한다고 주장하였다.**

고전주의 범죄학 이론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인간은 범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큰 고통을 받게 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다. 범죄통제를 위해서는 처벌의 엄격성, 신속성, 확실성이 요구되며 이 중 처벌의 확실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론은 **합리적 선택이론**이다.

1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유사성교행위를 제외한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는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 “성매매피해자”란 위계, 위력에 의하여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등을 말한다. 다만, 고용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피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불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성매매피해상담소등의 인계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 ②

해설 : ㉠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성매매피해자”란 위계, 위력에 의하여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등을 말한다. 고용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피해자에 포함된다.(되지 않는다 X).**

※참고 : 성매매 피해자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X).**

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②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응급조치에는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조치가 있다.
- ③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하는 경우,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임시조치에는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이 있다.

정답 : ②

해설 : ②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응급 조치에는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X - 임시조치에 해당한다.)** 등의 조치가 있다.

15. 선거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통상 비상근무체제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개표 종료 때까지이며, 경계강화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 전일까지이다.
- ② 대통령 후보자는 갑호경호 대상으로 후보자 등록 시부터 당선 확정 시까지 후보자가 원하는 경우 유세장·숙소 등에 대해 24시간 경호임무를 수행하고, 후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시·도경찰청에서 경호경험이 있는 자를 선발해 관내 유세기간 중 근접 배치한다.
- ③ 투표소의 질서유지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합동으로 하고, 경찰은 112 순찰차를 투표소 밖에 배치하여 거점근무 및 순찰을 실시하고, 정복 경찰을 투표소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 ④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개표소 안에서 무기 등을 지닐 수 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원조요구가 있더라도 개표소 안으로 투입되는 경찰관은 무기를 휴대할 수 없다.

정답 : ①

- 해설 : ② 대통령 후보자는 **을호** 경호 대상으로 후보자 등록 시부터 당선 확정 시까지 후보자가 원하는 경우 유세장·숙소 등에 대해 24시간 경호임무를 수행하고, 후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시·도경찰청에서 경호경험이 있는 자를 선발 해 관내 유세기간 중 근접 배치한다.
- ③ 투표소의 질서유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 경비하고(경찰과 합동으로 X)**, 경찰은 112 순찰차를 투표소 밖에 배치하여 거점근무 및 순찰을 실시하고, 정복 경찰을 투표소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 ④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개표소 안에서 무기 등을 지닐 수 없으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원조요구가 있는 경우 개표소 안으로 투입되는 경찰관은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16. 「도로교통법」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는 제외한다.
- ㉡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로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 ㉣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O) ㉡(X) ㉢(O) ㉣(X) ② ㉠(X) ㉡(O) ㉢(X) ㉣(O)
 ③ ㉠(X) ㉡(X) ㉢(O) ㉣(X) ④ ㉠(X) ㉡(O) ㉢(O) ㉣(X)

정답 : ④

해설 : ㉠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도 자동차에 포함된다.

- ㉢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X)**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화성기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주거·학교·종합병원 지역에서 주간(07:00~해지기 전)에 등가소음도(Leq) 65dB(A)이하의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 ㉡ 화성기등의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현장 경찰공무원)이 측정하며,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3.5m 떨어진 지점으로 하되,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1.5m 높이에서 측정한다. 다만, 주된 건물의 경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속 건물, 광장·공원이나 도로상의 영업시설물, 공원의 관리사무소 등은 소음 측정 장소에서 제외한다.
- ㉢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화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화성기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화성기등 사용의 제한)는 예술·체육·종교 등에 관한 집회 및 1인 시위에도 적용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 ①

해설 : ㉣ 순수한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나 시위가 아니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화성기등 사용의 제한)는 예술·체육·종교 등에 관한 집회 및 1인 시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위장탈출 혐의자 또는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외공관장등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를 직접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경찰청장은 보호신청자에 대하여 보호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 등 임시보호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 ④

해설 : ④ **국가정보원장(경찰청장 X)**은 보호신청자에 대하여 보호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일시적인 신변안전 조치 등 임시보호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국가정보원장 X)**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9.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수사경합에 따른 사건송치를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7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90일이 지난 후에는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없다.

정답 : ②

- 해설 :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수사경합에 따른 사건송치를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하며, 90일이 지난 후에도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20.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강제퇴거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조세, 공과금을 체납한 사람
 - ㉡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 ㉢ 구류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사람
 - ㉣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조건부 입국 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람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 ①

- 해설 : ㉠ 조세, 공과금을 체납한 사람 - **출국정지 대상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사람